

한·인도 CEPA 체결 2년의 평가: 교역부문의 성과와 과제

이 웅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wlee@kiep.go.kr, Tel: 3460-1139)
송영철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67)
조충제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cjchoi@kiep.go.kr, Tel: 3460-1025)

차 례 ● ● ●

1. 한·인도 CEPA 추진경과
2.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교역동향 및 성과
3. 한·인도 CEPA 교역부문의 문제점
4. 정책대안

주요 내용 ● ● ●

- ▶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2011년 11월 현재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음.
- ▶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과 수입 규모는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입보다 빠르게 증가함.
 - 2010년 한국의 대인도 수출 규모는 약 114억 달러로, 2009년 동기대비 42.7% 증가하여 같은 기간 한국의 대세계 총수출증가율(2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 한국의 대인도 수입 규모는 약 56억 달러로, 2009년 대비 37% 증가하여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세계 총수입증가율(31.6%)보다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비중 순위에서 인도는 2010년 독일 등을 제치고 7위까지 상승함.
- ▶ 한·인도 CEPA 이후 양국간 교역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남김.
 - 2011년 현재까지 CEPA 특혜관세율이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품목이 상당수 있으며(한국 수출금액의 약 17.3%, 인도 수출금액의 1.5%), 이에 따라 실질 양허율이 낮아져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양국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됨.
 - ※ 이는 특히 인도 측 MFN 관세율의 지속적인 인하 때문임.
 -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은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더욱 증가함.
- ▶ 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한·인도 CEPA 특혜관세율의 조기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양국이 CEPA 특혜관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추가 인하할 경우, MFN 관세율과의 차이가 대폭 줄어들어 실질적인 양허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인도 측의 수출증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양국이 CEPA 관세율 인하 폭을 확대할수록 인도 측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 중 관세인하보다 현지 수요 등에 민감한 제품이 많은 반면, 인도의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대체로 가격에 민감한 원부자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또한 2014년까지 양국의 교역 목표액인 300억 달러는 대폭 증가로 조정되어야 함.
 - 1993년 이후 양국 교역은 매년 평균 14.5%씩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CEPA에 의한 관세인하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한·인도 교역량은 2015년 340억 달러, 2020년 6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관세인하 효과가 커질 경우 양국간 교역량은 더욱 증대되며, 인도가 우려하는 무역수지 적자폭은 관세인하를 가속화할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1. 한·인도 CEPA 추진경과

■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는 2011년 10월 기준으로 시행된 지 만 1년 11개월을 맞음.

- 한·인도 CEPA는 2006년 3월 첫 공식협상이 시작된 이후 3년 6개월 만인 2009년 8월 7일 최종 서명됨으로써 체결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2009년 11월 국내 국회비준을 마친 후 2010년 1월에 공식 발효됨.

표 1. 한·인도 CEPA 추진경과

일시	내용	비고
2004. 5	인도, 단기 FTA 추진 대상으로 확정	FTA 추진 로드맵 작성
2005. 1~2006. 1	총 4차례 한·인도공동연구(JSG) 회의	2005. 12 국내 공청회 개최
2006. 1	한·인도 CEPA 협상개시 결정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의
2006. 3~2008. 9	총 12차례 공식협상 개최	2008. 9 실질적 타결
2008. 10~11	한·인도 CEPA 법률 검토회의	협정문안 조정 및 명료화
2009. 2	한·인도 CEPA 가서명	2009. 4~5 인도 총선
2009. 8. 7	한·인도 CEPA 공식서명	2009. 7 인도 내각승인
2009. 8. 26	한국,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2009. 11	한국, 국회 비준동의	만장일치로 비준
2010. 1. 1	한·인도 CEPA 발효	인도 델리에서 양국정상회담 개최
2011. 1	1차 공동위원회 개최	인도 델리에서 개최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종합.

■ 한·인도 CEPA 시행 1년차를 맞이한 2011년 1월에는 양국 통상장관 간 제1차 공동위원회가 인도 델리에서 개최됨.

-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통해 CEPA 체결 이후 교역량 증대 및 CEPA 활용률 제고, 자유화 확대 등을 위한 협정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MOU, △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진 하기로 합의함.
- 우리나라는 인도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해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체류연장 심사 처리기간 단 축,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위한 MOU 체결 추진을 요청함.
- 또한 인도 내 한류 확대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함.
-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확대를 위해 △ 우리나라 은행지점 개설 확대,¹⁾ △ 포스코 인 도제철소 건설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함.

■ 한·인도 CEPA 2차 공동위원회는 오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1)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첸나이 지점개설 승인을 요청, 호의적인 검토 약속을 받아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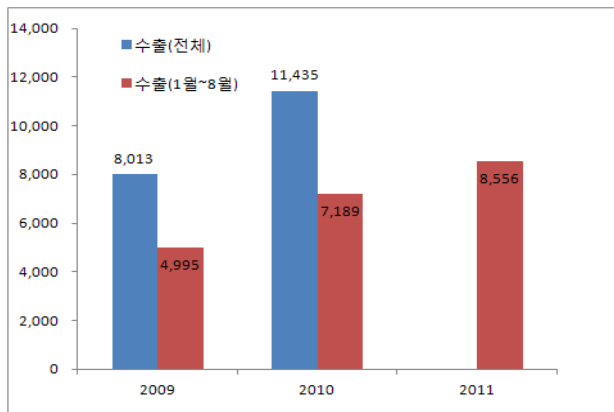
2.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교역동향 및 성과

가. 한국의 대인도 교역

1) 대인도 수출

-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함.
- 2010년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규모는 약 114억 달러로, 2009년 대비 42.7% 증가하여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세계 총수출증가율인 28.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2010년 총수출금액은 2009년 약 80억 달러 대비 34억 달러 이상 증가함.
- 2011년(1~8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2010년 대비 19% 증가하여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세계 증가율인 23.7%보다 낮게 나타남.
- 대인도 수출증가율이 대세계 수출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2010년 대인도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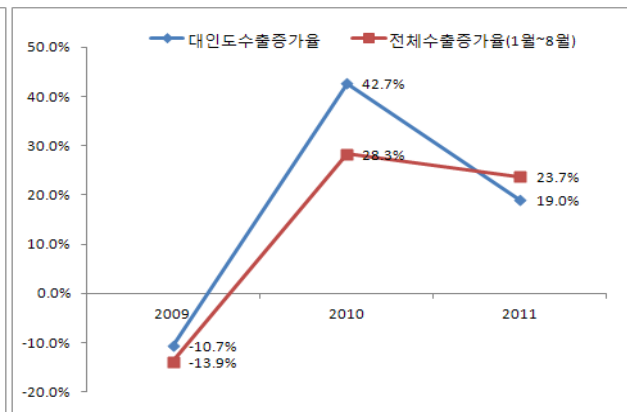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대인도 수출 추이



주: 2011년 수출증가율은 1~8월 기간임.
자료: KITA.net 무역통계.

그림 2. 한국의 총수출 및 대인도 수출증가율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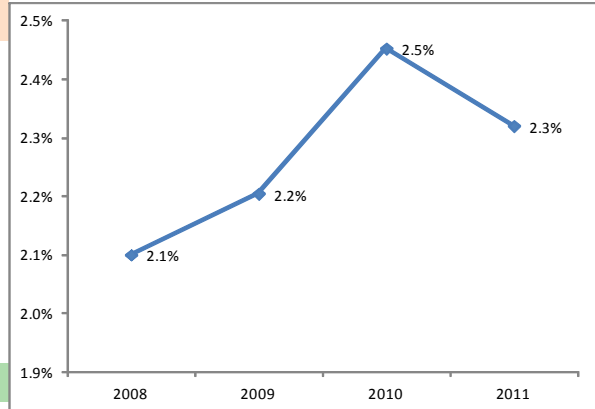
주: 2011년 수출증가율은 1~8월 기간임.
자료: KITA.net 무역통계.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비중 순위에서 인도는 2009년 9위에서 2010년 독일 등을 제치고 7위까지 상승함.
-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상위국 가운데 대부분의 교역이 중계무역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양자간 수출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인도의 순위는 5위까지 올라감.
- 한편 대인도 수출증대로 인도가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1%, 2009년 2.2%에서 2010년 2.5%까지 높아졌다가 2011년(1~8월) 2.3%를 기록함.

표 2. 한국의 국가별 수출비중 및 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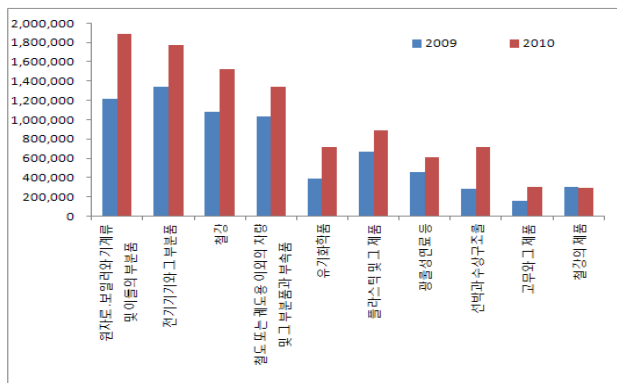
순위	국가	2010년	2011년	국가	2009년	2008년
1	중국	25.1	23.8	중국	23.9	21.7
2	미국	10.7	10.0	미국	10.4	11.0
3	일본	6.0	7.0	일본	6.0	6.7
4	홍콩	5.4	5.5	홍콩	5.4	4.7
5	싱가포르	3.3	3.8	싱가포르	3.7	3.9
6	대만	3.2	3.5	대만	2.7	1.1
7	인도	2.5	2.3	대만	2.6	2.7
8	베트남	2.1	2.3	독일	2.4	2.5
9	인도네시아	1.9	2.4	인도	2.2	2.1
10	브라질	1.7	2.4	베트남	2.0	1.8



주: 1) 순위는 2010년 기준으로 적용.
2) 2011년도 비중은 1~8월 기간임.
자료: KITA.net 무역통계.

- 대인도 수출은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전기기기,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최대 수출품목인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수출금액은 약 18억 달러로 2009년 대비 55.6% 증가하였으며, 이 밖에 전기기기(32.8%), 철강(41.2%), 자동차부품(30.6%), 유기화학품(86%) 등의 수출이 2009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2011년(1~8월)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48%), 전기기기(13.5%), 철강(17.6%), 자동차부품(15.7%), 유기화학품(31.9%) 등의 수출 역시 2010년 동기대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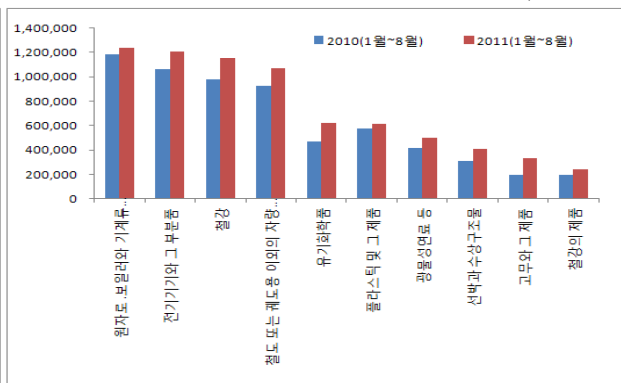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대인도 품목별 수출추이



자료: KITA.net 무역통계.

그림 4. 한국의 대인도 품목별 수출추이(1~8월)

(단위: HS 2단위 기준,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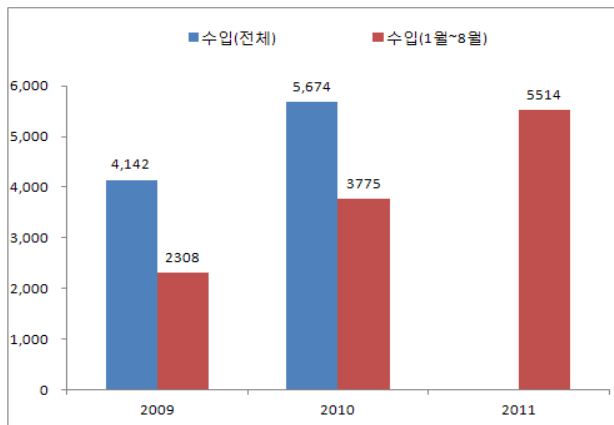
자료: KITA.net 무역통계.

2) 대인도 수입

-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입도 같은 기간 대세계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함.

- 2010년 한국의 대인도 수입 규모는 약 56억 달러로, 2009년 대비 37% 증가하여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세계 총수입증가율인 31.6%보다 높게 나타남.
- 2011년(1~8월) 대인도 수입은 2010년 동기대비 46.1%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입증가율(26.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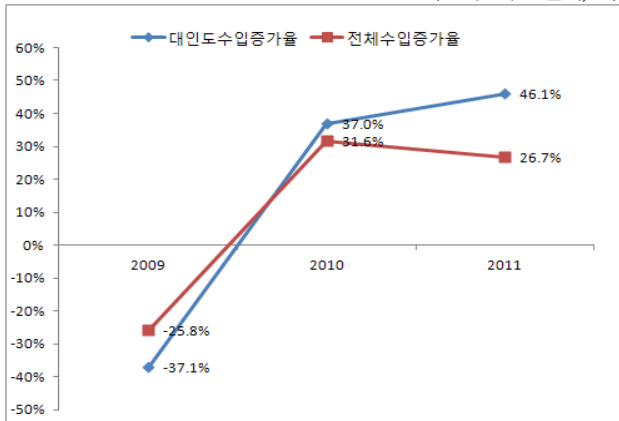
그림 5. 한국의 대인도 수입추이



주: 2011년 증가율은 1~8월 기간임.
자료: KITA.net 무역통계.

그림 6. 한국의 총수출 및 대인도 수입증가율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주: 2011년 증가율은 1~8월 기간임.
자료: KITA.net 무역통계.

- 이에 따라 한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대인도 수입비중은 2008년 1.5% 이후 2009년 1.3%, 2010년 1.3%로 낮아졌으나 2011년(1~8월) 1.8%로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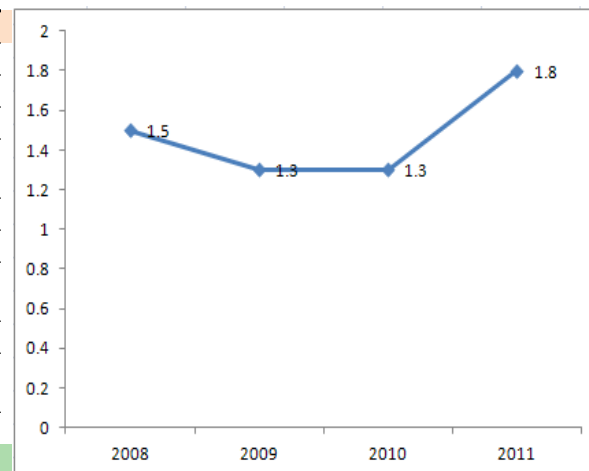
- 대인도 수입비중은 증가했으나 국가별 수입비중 순위는 2008년 이후 16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표 3. 한국의 국가별 수입비중 및 순위

(단위: %)

순위	국가	2011년	2010년	국가	2009년	2008년
1	중국	16.9	16.8	중국	16.8	17.7
2	일본	12.4	15.1	일본	15.3	14.0
3	미국	7.4	9.5	미국	9.0	8.8
4	사우디 아라비아	6.0	6.3	사우디 아라비아	6.1	7.8
5	호주	5.	4.8	호주	4.6	4.1
6	카타르	4.2	2.8	독일	3.8	3.4
7	인도네시아	3.7	3.3	대만	3.0	2.4
8	대만	3.0	3.2	UAE	2.9	4.4
9	독일	3.0	3.4	인도네시아	2.9	2.6
10	UAE	2.9	2.9	카타르	2.6	3.3
16	인도	1.8	1.3	인도	1.3	1.5

주: 2011년 수입비중은 1~8월 기간임.
자료: KITA.net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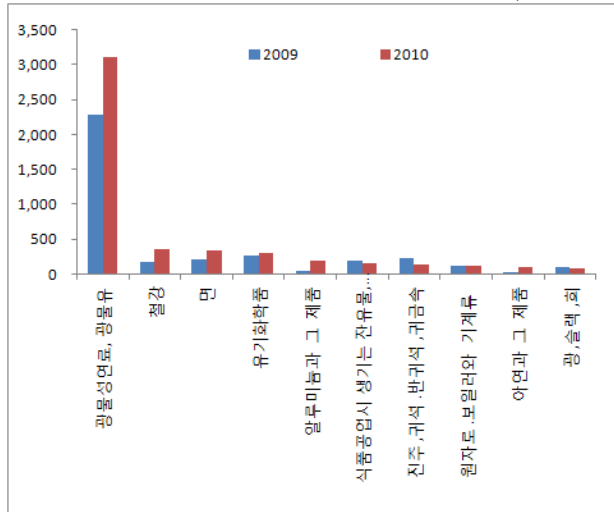


■ 대인도 수입은 철강, 광물성연료, 면, 알루미늄, 아연 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2010년 최대 수입품목인 광물성연료 수입금액은 약 31억 달러로 2009년 대비 35.6% 증가하였으며, 이 밖에 철강(118%), 면(66.1%), 알루미늄(435%), 아연(264%) 등의 수입이 2009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특히 면제품의 경우 CEPA 협정 특혜세율 적용으로 관세율이 0.5% 포인트로 소폭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대폭 증가함.
- 2011년(1~8월) 역시 광물성연료(50.9%), 철강(53.8%), 유기화학품(57%) 등의 수입이 2010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함.

그림 7. 한국의 대인도 품목별 수입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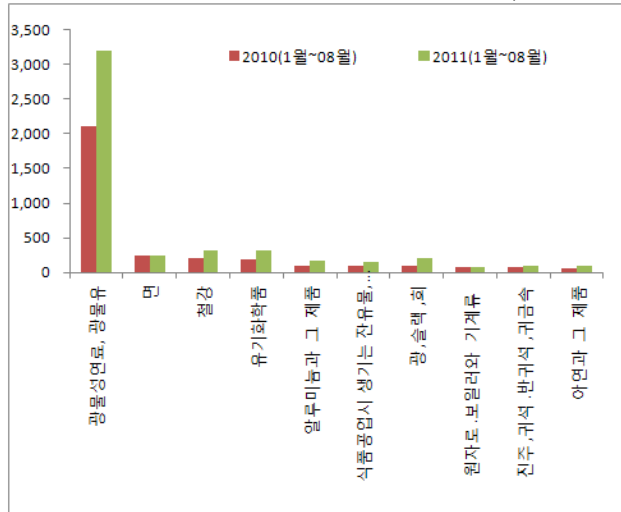
(단위: HS 2단위 기준, 백만 달러)



자료 : KITA.net 무역통계.

그림 8. 한국의 대인도 품목별 수입추이(1~8월)

(단위: HS 2단위 기준, 백만 달러)



자료 : KITA.net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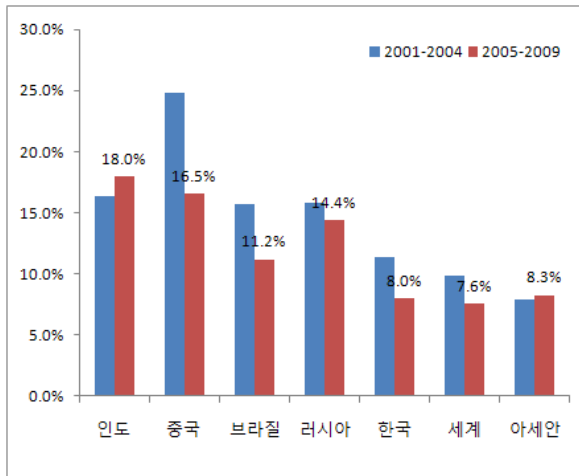
나. 인도의 대한국 교역

■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교역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임.

- 최근 5년간 인도의 수출·수입 증가율은 세계 및 아시아 신흥국보다 높은 수준임.
- 2005~09년 인도의 수출증가율은 18%로 중국(16.5%)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수입증가율 역시 23.3%로 러시아(18.4%) 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 특히 2010년 인도의 총교역규모는 5,774억 달러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2002년 이후 만 8년 만에 5,000억 달러를 돌파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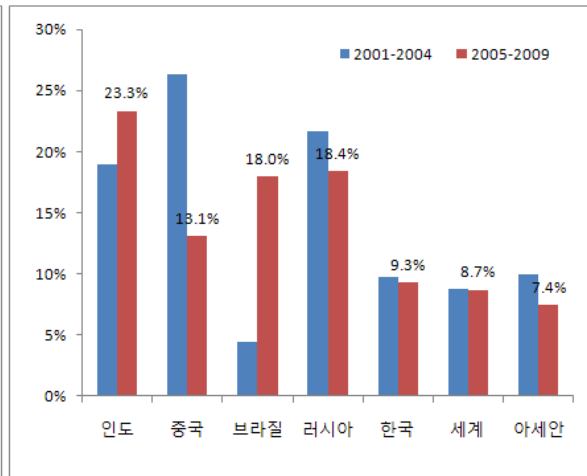
2) 교역규모 1,0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로 돌파하는 데 중국은 13년(1988년 1,028억 달러, 2001년 5,096억 달러), 한국은 17년(1988년 1,125억 달러, 2005년 5,457억 달러)이 소요되었음.

그림 9. 기간별 수출증가율 비교



자료: IMF DTS.

그림 10. 기간별 수입증가율 비교



자료: IMF DTS.

■ 한·인도 CEPA 체결 이후인 2010년 인도의 총수출에서 대한민국 수출 및 수입비중은 2009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지만 국가별 순위는 수출이 2009년과 2010년 11위로 동일하고, 수입은 2009년 10위에서 2010년 9위로 상승함.

－ 한편 인도의 총수출에서 대한민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9%에서 2010년 1.6%로, 수입비중 역시 2009년 2.9%에서 2010년 2.8%로 소폭 감소함.

표 4. 인도의 10대 수출국(2010년)

순위	국가	수출	비중 (2010년)	국가	비중 (2009년)
1	UAE	34,349	13.7%	UAE	13.4%
2	미국	25,548	10.2%	미국	10.9%
3	중국	19,615	7.8%	중국	6.4%
4	홍콩	10,329	4.1%	홍콩	4.4%
5	싱가포르	10,302	4.1%	싱가포르	4.2%
6	독일	6,758	2.7%	영국	3.4%
7	벨기에	6,296	2.5%	독일	3.0%
8	인도네시아	6,245	2.5%	사우디아라비아	2.1%
9	사우디아라비아	5,227	2.1%	벨기에	2.1%
10	일본	5,191	2.0%	일본	2.0%
11	한국	4,140	1.6%	한국	1.9%

자료: 인도 상공부.

표 5. 인도의 10대 수입국(2010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수입	비중 (2010년)	국가	비중 (2009년)
1	중국	43,479	11.8%	중국	10.6
2	UAE	32,753	8.9%	UAE	6.7
3	스위스	24,802	6.7%	사우디아라비아	5.9
4	사우디아라비아	20,385	5.5%	미국	5.8
5	미국	20,050	5.4%	스위스	5.8
6	독일	11,891	3.2%	호주	4.3
7	이란	10,475	3.0%	이란	4.0
8	나이지리아	10,787	2.9%	독일	3.5
9	한국	10,475	2.8%	인도네시아	3.0
10	인도네시아	9,918	2.7%	한국	2.9

자료: 인도 상공부.

3. 한·인도 CEPA 교역부분의 문제점

가. 한·인도 CEPA 협정 특혜세율 적용품목의 범위

■ 2010년 한·인도 CEPA 출범 당시만 해도 CEPA 협상기간 및 협상 당시 기준관세율, 이후 인도 측 실행관세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한·인도 CEPA 협정 특혜세율(이하 CEPA 세율)이 최혜국대우 관세율(이하 MFN 세율)³⁾보다 높은 경우가 적지 않았음.

- 양국은 2006년 CEPA 협상을 개시할 당시 같은 해 4월 1일 MFN 세율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특히 인도가 MFN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10년 1월 발효 당시 CEPA 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품목이 있었음.
- 인도의 비농산물 대상 평균관세율은 2006년 16.4%였으나 2009년에는 10.1%로 낮아짐.
- 실제로 2011년 현재 기준으로만 해도 대인도 상위 50대 수출품목(HS 6단위) 중 7개 품목의 CEPA 세율이 MFN 세율과 같거나 더 높으며, 이들 품목의 2011년 1~8월 대인도 수출금액은 약 16억 달러로 전체의 17.3%를 차지하고 있음.
- 대인도 상위 50대 수출 품목은 전체 수출비중의 약 64%를 차지함.
- 한편 대인도 수입 상위 50개 품목 중 CEPA 세율이 MFN 세율과 같거나 더 높은 품목은 2011년 현재 세 개에 불과하며, 같은 기간 대인도 수입금액은 약 9,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1.5% 정도임.

표 6. 대인도 50대 수출품목에 대한 인도의 MFN 세율과 CEPA 특혜세율 비교: 2011년 1~8월 기준
(단위: %)

HS		품목	CEPA 양허유형	수입 비중	관세율	
					2011년 MFN 세율	2011년 CEPA 특혜세율
유기화학품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SEN	3.37	10	11.3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0290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의 부분품	E-5	0.63	7.5	7.5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E-8	0.86	7.5	9.4
	843149	데릭, 크레인, 그레이더, 레벨러, 엑스캐베이터, 향타기의 부분품	E-5	1.06	7.5	7.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850423	유입식의 변압기(용량 10,000KVA초과)	E-8	0.63	7.5	9.4
일반차량	870840	기어박스	SEN	0.45	10	11.3
	870899	자동차용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RED	10.27	10	10.6

주: 1) E-5(5년 내 철폐), E-8(8년 내 철폐), SEN(10년 내 50% 감축), RED(8년 내 1~5%로 인하)

2) 위 품목 총 수출비중은 18.11% 임. 2011년도 1~8월 대인도 수출은 약 86억 달러임.

자료: KITA.net 무역통계, 한·인도 CEPA 협정문 양허안, 한국 및 인도 관세청 관세율.

3) 현재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임. 미국의 경우 MFN 대신 정상무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s)라는 용어를 사용함.

표 7. 대인도 50대 수입품목에 대한 우리의 MFN 세율과 CEPA 특혜세율 비교: 2011년 1~8월 기준

(단위: %)

HS		품목	CEPA 양허유형	수입 비중	관세율	
					2011년 MFN 세율	2011년 CEPA 특혜세율
조제사료	230690	기타(참깨의 것)	SEN	0.5	55.10	55.13
유기화합물	292421	우레인과 그 유도체 및 염	E-5	0.2	2.0	5.2
철강	720230	페로실리코망간	E-8	0.8	5.0	6.0

주: 위 품목 총수입비중은 1.6%임. 2011년도 1~8월 대인도 수입은 약 55억 달러임.
자료: KITA.net 무역통계, 한·인도 CEPA 협정문 양허안, 한국 및 인도 관세청 관세율.

■ 하지만 이러한 모순구조가 2012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와 교역증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양국간 관세인하 가속화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기 우리의 대인도 수출품목(표 6 참고) 중 2개 품목(840290, 843149)의 경우, 2012년 CEPA 세율이 MFN 세율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나, 이들 품목의 수출비중은 약 1.7%에 불과함.
- 인도의 경우는 2012년부터 CEPA 세율이 MFN 세율보다 낮아지는 품목은 없겠지만 그 수출비중이 워낙 적어 (2011년 1~8월 기준 1.5%)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음.

나. 실질적인 양허율

■ 이상과 같은 모순구조는 결국 CEPA 발효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양허제외 품목 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어렵게 체결한 CEPA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유발시킴.

- 2010년 발효 당시 양국의 교역금액 대비 양허율은 각각 한국 89.7%, 인도 85.5%였음.⁴⁾
- 특히 한국의 경우 교역금액의 최소 17%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이 MFN 세율보다 CEPA 세율이 높아 교역금액 기준 실질적인 인도 측 양허율은 당초 85.5%에서 68.2% 이하로 대폭 낮아짐.
- 이는 2011년 8월 발효된 일본·인도 CEPA에서 인도가 일본 측에 제시한 양허율보다 낮음.
- o 한·인도 양허안은 일·인도 양허안에 비해 개방 폭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관세인하 속도는 빠른 상황임.

4) 양국 교역 품목 및 금액은 CEPA 협상 개시 전인 2004~05년 평균을 기준으로 적용함.

표 8. 한·인도와 일·인도 양허 스케줄 비교

구분	양허 스케줄								
한국→ 인도	즉시 철폐	E-5	소계	E-8	소계	RED	SEN	누계	양허 제외
	34.8%	14%	52.4%	22.1%	74.5%	8.5%	2.4%	85.5%	14.5%
일본→ 인도	즉시 철폐	B5	소계	B7	소계	B10		누계	양허 제외
	약 7.6%	약 10.0%	약 17.6%	약 0.1%	약 17.7%	약 72.0%		약 90%	약 10%

주: 1) 해당국 양허 스케줄에 의거하여 작성.

2) 우리나라의 E-5, E-8은 각각 5년 철폐, 8년 철폐를 뜻하고, RED는 8년 내 1~5%로 인하, SEN은 10년 내 50% 감축을 의미함.

3) B5, B7, B10은 각각 5년간 철폐, 7년간 철폐, 10년간 철폐를 의미함.

4) 관세감축 방식은 양 FTA별로 차이가 있어 한·인도 CEPA는 '1/n' 방식으로 E-5의 경우 1/5씩 관세를 인하하고, 일·인도 CEPA는 '1/(n+1)' 방식으로 B5는 1/6씩 감축하게 됨.

자료: 한국무역협회, 「일·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p. 9 재인용.

다. 인도의 대한민국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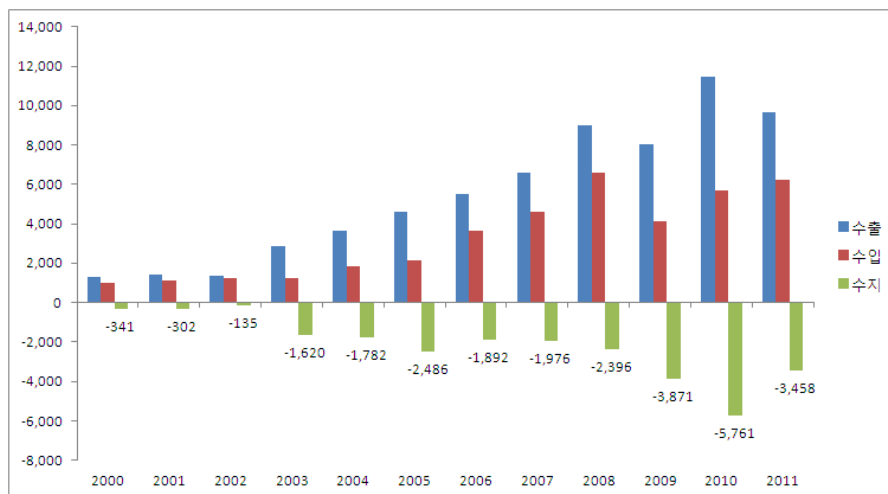
■ 지속적인 교역급증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인도의 대한민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2000년도 대한민국 무역수지 적자는 약 3억 달러였으나, 2003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10년에는 50억 달러 이상의 적자폭을 기록함.

■ 이러한 양국간 무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그림 11. 한·인도 양국간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1) 무역수지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 기준임.

2) 2011년 수출입 및 수지는 1~8월 기간임.

자료: CEIC

4. 정책대안

가. 한·인도 CEPA 협정 특혜세율의 조기 업그레이드

■ 상기의 한·인도 CEPA 교역부분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국 특혜세율의 조기 업그레이드, 즉 협정세율 인하의 가속화가 있음.

- 양국이 CEPA 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추가 인하할 경우, MFN 세율이 CEPA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대폭 줄어들어 실질적인 양허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인도 측의 수출증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양국이 CEPA 세율 인하폭을 확대할수록 인도 측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 World Bank의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에서 제공하는 'SMART'를 이용한 관세인하에 따른 교역량 증가 및 복지증가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보다 인도의 대한국 수출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⁵⁾

- 농수산물을 제외한 전체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 인하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약 1억 8천만 달러 증가하는 데 반해, 인도의 경우 약 6억 달러 증가함.
- 자중손실(DWL: Deadweight Loss)⁶⁾ 감소로 인한 인도 측의 복지효과는 약 5,500만 달러 증가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약 1,800만 달러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우리나라의 관세인하 효과가 인도 측보다 낮은 것은 양국간 교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무선전화 및 전기전자 부품류, 선박, 철강제품(대인도 수출비중 35.2%)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 품목은 우리의 현지진출 기업에 공급되는 등 관세보다는 현지수요에 보다 민감함.
- 반면 인도의 대한국 최대수출품인 경질석유 및 조제품, 면제품(수출비중 60.2%) 등은 특성상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매우 높은 품목임.

■ 또한 관세인하 폭을 확대할수록 인도 측의 무역수지 및 양국의 복지개선 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됨.

5) SMART는 품목별 단일시장의 관세인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무역특혜협정에 의한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이용. SMART는 품목별 단일시장을 HS, SIC 등으로 분류하여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wits.worldbank.org/wits> 참고.

6) 시장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의 균형이 최적이지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로, 최적균형 대비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을 말함. 이 글에서 자중손실은 관세부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농수산물을 제외한 전체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 인하할 경우 한국의 무역효과(수출증가)는 3억 5천만 달러, 인도의 무역효과는 11억 달러로 인도의 무역수지가 약 7억 5천만 달러 개선됨.
- 한편 관세를 50% 인하할 경우, 한국과 인도의 무역효과는 각각 8억 8천만 달러와 28억 달러로 나타나 인도의 무역수지 적자가 19억 2천만 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
- 복지효과를 보면, 관세 20% 인하 시 한국 소비자는 약 3,500만 달러, 인도 소비자는 1억 1천만 달러의 혜택을 보며, 관세가 50% 인하되면 각각 그 효과가 8,200만 달러, 23억 달러로 대폭 늘어남.
- 따라서 관세인하폭을 증대시킬 경우 인도의 대한민국 무역수지 적자폭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효과의 경우도 인도 측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됨.

표 9. World Bank WITS의 SMART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농수산물 제외 전 품목)

(단위: 달러)

인도의 대한민국 수입품 관세인하 시		
관세인하	무역효과(한국의 수출증가)	복지효과(인도 소비자)
10%	175,932,111	55,141,591
20%	351,864,221	106,131,026
50%	879,660,584	229,026,764
한국의 대인도 수입품 관세인하 시		
	무역효과(인도의 수출증가)	복지효과(한국 소비자)
10%	558,383,268	17,770,726
20%	1,116,766,536	34,956,796
50%	2,791,914,284	81,773,964

주: 시뮬레이션 결과는 2009년 기준 양국의 농수산물을 제외한 전 품목을 이용하여 도출된 것임. 한·인도 CEPA가 2010년부터 발효된 바, 2009년도를 기준으로 관세인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음.

자료: World Bank WITS의 SMART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나. 양국간 교역 목표액 증액

- 한·인도 CEPA 발효 및 CEPA 세율 조기 업그레이드(관세인하 가속화 조치) 등을 감안한, 보다 도전적인 양국간 교역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필요함.
- 2010년 1월 양국 정부는 한·인도 CEPA를 발효시키면서 교역 목표액을 2014년 300억 달러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양국간 교역 잠재력과 관세인하에 따른 교역증대 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
- 실제로 양국의 교역량은 1993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1993~2010년 14.5%), 특히 2003년 이후(2003~10년 28.5%)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인도는 최근 다른 국가와 FTA를 추진하면서 양자간 교역 목표액을 경쟁적으로 높게 설정하고 있음(표 10 참고).

표 10. 인도의 국가별 교역목표

대상국가	교역증대 목표
ASEAN*	2012년까지 700억 달러 목표(2010년 기준 약 500억 달러)
EU**	2014년까지 2,000억 달러 목표(2010년 기준 약 800억 달러)
싱가포르*	2015년까지 320억 달러 목표(2010년 기준 약 160억 달러)
중국**	2015년까지 1,000억 달러 목표(2010년 기준 약 600억 달러)
한국*	2014년까지 300억 달러 목표(2010년 기준 약 150억 달러)
말레이시아**	2015년까지 150억 달러 목표(2010년 기준 약 80억 달러)
미국	2015년까지 1,000억 달러 목표(2010년 기준 600억 달러)
독일	2012년까지 200억 달러 목표(2010년 기준 130억 달러)
러시아	2015년까지 200억 달러 목표(2010년 기준 약 50억 달러)
아프리카	2015년까지 700억 달러 목표(2010년 기준 약 450억 달러)

주: * 인도와 FTA를 체결한 국가 및 지역협력체.

** FTA 협상 중인 국가 및 지역협력체.

자료: 인도 보도자료 종합.

■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한·인도 간 교역 목표액을 기존에 비해 획기적인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지난 13년간(1993~2010년) 양국 교역의 평균 성장률(14.5%)을 이용하여 교역량을 추정해 보면, 양국간 교역량은 2015년 약 340억 달러, 2020년 6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이는 한·인도 CEP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를 배제한 평균 성장률에 근거한 추정치임.
- 여기에 현재 CEPA 세율의 인하속도를 두 배로 높일 경우, 양국간 교역액은 2015년까지 약 48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 이는 한·인도 CEPA 발효 이전인 2009년 MFN 세율을 50% 인하했을 경우 늘어나는 교역량을 감안한 수치로, 실제 CEPA 세율 인하속도를 두 배 높일 경우 교역증가 효과는 더 커질 것임.

■ 또한 양국간 교역 목표액을 높이기 위해 관세인하 속도를 가속화할수록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남.

- 상기의 조건에 관세 10% 인하효과를 감안하였을 경우,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 110억 달러, 2020년 225억 달러로 추정되나, 관세를 50% 인하할 경우에는 적자폭이 2015년 73억 달러, 2020년 154억 달러로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됨.

표 11. 한·인도 교역량과 무역수지 추정 결과

(단위: 백만 달러)

연도	평균성장률을 이용한 추정치		관세 10% 인하효과 추가 시		관세 20% 인하효과 추가 시		관세 50% 인하효과 추가 시	
	교역량	무역수지	교역량	무역수지	교역량	무역수지	교역량	무역수지
2011	19,647	6,653	20,613	6,144	21,637	5,578	27,780	3,994
2012	22,562	7,683	23,669	7,101	24,842	6,455	31,943	4,645
2013	25,909	8,873	27,178	8,208	28,522	7,469	36,730	5,400
2014	29,752	10,246	31,208	9,486	32,748	8,642	42,234	6,278
2015	34,166	11,832	35,834	10,964	37,600	9,998	48,564	7,297
2016	39,236	13,662	41,147	12,670	43,171	11,567	55,841	8,480
2017	45,057	15,776	47,248	14,642	49,567	13,381	64,210	9,853
2018	51,742	18,215	54,254	16,920	56,912	15,479	73,832	11,447
2019	59,420	21,031	62,299	19,551	65,345	17,904	84,897	13,297
2020	68,237	24,282	71,537	22,591	75,028	20,708	97,619	15,444

주: 관세 10%(20%, 50%) 인하효과 추가 시 교역량 및 무역수지 추정치는 평균성장률을 이용한 추정치에 2009년 MFN 세율을 기준으로 World Bank WITS의 SMART로 시뮬레이션한 관세인하 효과를 추가한 것임.

자료: World Bank WITS의 SMART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